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상정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인용)

개정이유

- 미술장식의 심의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,
-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조정함(안 제9조제1항)
- 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30명중 13명을 선정하여 개최함(안 제13조제1항)
-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(안 제9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원 증원 이유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장식품 선정관련에 따른 로비, 압력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선정에 객관성을 기여하기 위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분야별 증원 계획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아직 미정이나 각계 전문가의 적절한 안배를 통하여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출품자가 심의위원으로 관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칙을 정하여 작품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101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3월 18일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회의시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장식품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3명의 위원을 선정 운영하는 것을 15명으로 수정

2. 주요골자

- 회의운영시 위원 선정을 15명으로 수정(안 제13조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 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<u>소집한다.</u>	제13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 위촉된 위원중 <u>13명</u> 의 위원 을 선정하여 소집한다.	제13조 ① ----- ----- ----- 15명 ----- -----.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3조제1항중 "13명"을 "15명"으로 한다.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13명” 을 “30명” 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부시장” 을 “업무담당국장” 으로 하며, “업무담당국장” 을 “위원중 호선된 위원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중 “필요할 때 소집한다” 를 “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중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재적위원” 을 “제1항의 위원중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부시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업무담당국장</u>이 되며,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과 관내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, 도시설계, 회화, 조경, 전시기획,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30명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②—————업무담당국장————— 위원회 호선된 위원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 략)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〈삭 제〉</p>
<p>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<u>재적위원</u>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3조(회의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필요할 때 위촉된 위원 중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②—————제1항의 위원 중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